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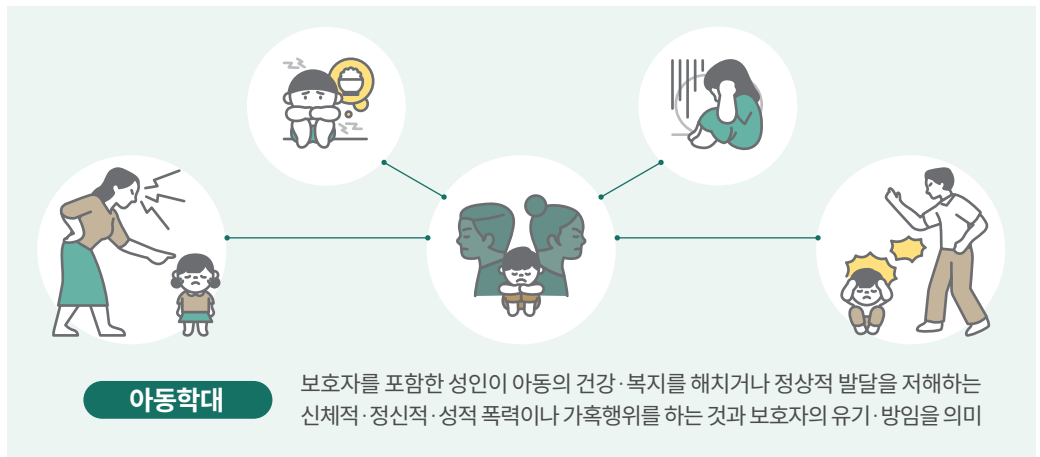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사회행정사업평가과 한주희 분석관

논의의 배경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의 유기·방임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하며, 피해아동의 장기적 사회 부적응과 학대의 세대 간 대물림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 2020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었으나 이후 사회적 논의는 다소 약화된 반면, 2024년에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이 30명에 이르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지속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여전히 큼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는 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조사·분석 체계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해 면담, 자료 요청 등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2020년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으므로,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제도의 실효성, 한계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 2020년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이후 2023년 3월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025년 12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 등이 발표됨

아동학대 발생 현황

-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사례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24년에도 24,492건이 발생하였으며, 재학대 사례 비율은 15.9%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학대(중복학대 포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방임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중복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 2개 이상이 중복된 학대로서 2018~2024년 동안 중복학대 중 신체 및 정서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의 성과지표인 ‘재학대 사례 비율(7.7%)’ 미달성

[표 1]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추세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학대사례	24,604 (100.0)	30,045 (100.0)	30,905 (100.0)	37,605 (100.0)	27,971 (100.0)	25,739 (100.0)	24,492 (100.0)
신체학대	3,436 (14.6)	4,179 (13.9)	3,807 (12.3)	5,780 (15.4)	4,911 (17.6)	4,698 (18.3)	4,625 (18.9)
정서학대	5,862 (23.8)	7,622 (25.4)	8,732 (28.3)	12,351 (32.8)	10,632 (38.0)	11,094 (43.1)	11,466 (46.8)
성학대	910 (3.7)	883 (2.9)	695 (2.2)	655 (1.7)	609 (2.2)	585 (2.3)	619 (2.5)
방임	2,604 (10.6)	2,885 (9.6)	2,737 (8.9)	2,793 (7.4)	2,044 (7.3)	1,979 (7.7)	1,800 (7.3)
중복학대	11,792 (47.9)	14,476 (48.2)	14,934 (48.3)	16,026 (42.6)	9,775 (34.9)	7,383 (28.7)	5,982 (24.4)
재학대 사례	2,543 (10.3)	3,431 (11.4)	3,671 (11.9)	5,517 (14.7)	4,475 (16.0)	4,048 (15.7)	3,896 (15.9)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2018~2024)」

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 현황

- **현재 아동학대 대응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기획·예산 지원 기능과 지방자치 단체의 현장 집행 및 사례관리 기능을 결합한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정부는 2019년 수립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2020년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등을 발표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과 공공 책임을 강화하였음
 - 2020년 10월부터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부터 원가정 복귀까지의 모든 절차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체계가 공공화됨
 - 지역에서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사례 및 사후관리¹⁾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아동보호전문위원을 배치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지원 및 공공기능 강화
 - 2020년 10월 이전에는 민간위탁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경찰 동행), 사례 및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수행

1) 사례관리는 조사 이후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안전 확보 및 회복을 목표로 조사·서비스 연계·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적·지속적 개입 과정을 의미함

아동학대 대응 예산 현황

- 아동학대 대응 관련 예산은 2020년 267억 원에서 2026년 587억 원으로 약 2.2배 증가**
 - 2021년 6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아동학대 대응 주요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일원화되어 안정성이 확보됨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며 예산이 급증('21년 330억 원 → '22년 448억 원)하였으나 2023년 이후 제도가 안정화되며 예산의 증가 폭이 둔화됨
- 보건복지부의 예산 비중이 90% 이상이며 2022년 이후 '사전 예방 및 통합 대응' 중심으로 예산 기조의 변화 필요성 대두**
 - 보건복지부의 예산 중 아동학대 대응 예산의 비중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예산 확대 요구 등이 계속되는 실정임

[표 2] 아동학대 대응 관련예산 사업별 추세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세부사업 등)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26,712	32,970	44,809	48,200	54,699	55,411	58,692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22,578	28,736	40,273	43,568	50,015	50,508	53,869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¹⁾	22,578	28,736	-	-	-	-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	38,128	41,305	48,565	49,058	52,369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2,145	2,263	1,450	1,450	1,500
법무부, 일반회계	193	218	248	265	245	245	245
아동인권 증진	193	218	248	265	245	245	245
경찰청, 일반회계 ²⁾	1,191	1,229	1,187	1,231	1,231	1,279	1,118
가정폭력 아동 등 학대 근절 활동 등	1,191	1,229	627	658	658	658	658
학대예방경찰관 역량 강화 등	-	-	560	573	573	621	460
성평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750	2,787	3,101	3,136	3,208	3,379	3,460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아동 성폭력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2,750	2,787	3,101	3,136	3,208	3,379	3,460

주 1)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주 2) 경찰청의 '사회적약자 보호 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상이 광범위하여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동학대 대응 현안 및 향후 과제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각각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인식 차이와 역할 중첩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따라 사전교육 및 대응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은 가해자 처벌과 사법적 통제를 추구함²⁾

2) 2024년 김승수 의원 등이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 및 처벌 규정을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법 체계상의 문제 및 사회적 논의 필요 등으로 인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 영국, 유럽 일부 국가는 여러 분야의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통합조직’을 운영하며 대응의 효율성과 아동보호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함
 - 영국 코번트리시의 ‘다기관 협력 아동보호 허브(Multi-Agency Safeguarding Hub)’는 경찰과 보건·사회복지·교육 등의 실무자들이 동일한 공간에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통합적인 아동보호를 수행
 - 아이슬란드의 ‘바르나후스(Barnahus)’는 수사기관과 복지기관이 아동친화적으로 통합된 공간에서 아동의 상황을 공동으로 평가한 후 후속 조치를 결정

▪ **아동학대 조사 이후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해자 및 보호자의 협력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개입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이 요구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적절한 성과관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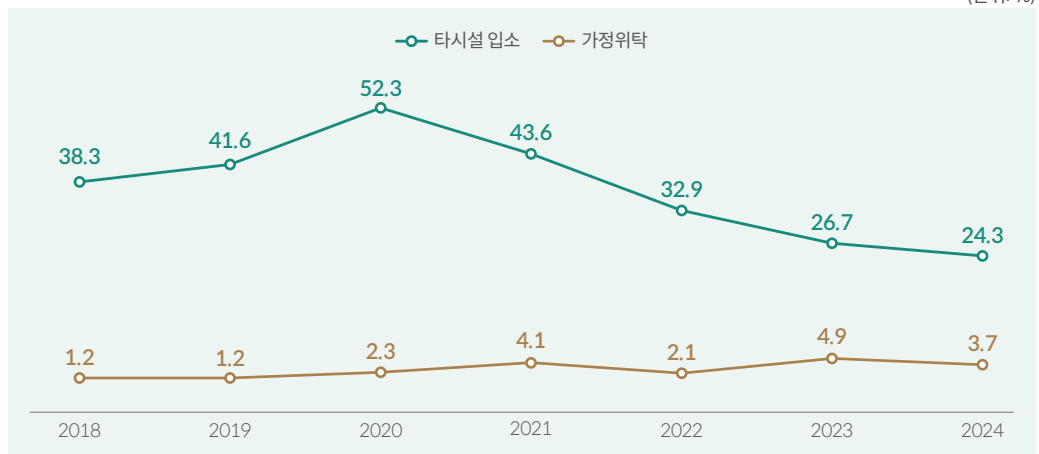
- 현행 「아동복지법」 제7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피해아동과 가족의 ‘사례 관리 및 회복지원’으로 재편되었으나 재편 이전의 역할에 근거한 성과평가 지표가 상당수 유지되고 있음

▪ **UNICEF 등에 따르면 시설 입소보다 가정 위탁이 피해아동에게 더 유익하므로 가정 위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재정 지원 필요**

- 가정 위탁은 준비되지 않은 원가족 복귀에 따른 재학대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학업성취도 등에 기여할 수 있음³⁾
- 시설 중심의 접근 대신 위탁 부모의 재정 인센티브와 전문성 교육에 예산을 편성하여 위탁가정의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비율

(단위: %)



3) Li, Dongdong et al., 2019, Comparing Long-Term Placement Outcomes of Residential and Family Foster Care: A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20(5): 653-664.
 Anna T. Smyke et al., 2012,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mparing foster care and institutional care for children with signs of reactive attachment disorder, Am J Psychiatry, 169(5): 508-514.